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AQ03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전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주)((전화) ☎ 1577-1640)
 4.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2014년 10월 17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4년 10월 24일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8.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11.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II.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 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 증권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투자신탁의 전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구조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일부환매를 하는 방법으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특정시점에 자투자신탁의 월분배금 마련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금 지급을 하지 않지만, 동일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

문에 이상과 같은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월분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기본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중목선정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총액
2. 배당의 안정성
3. 투자종목의 유동성(거래량)

또한, 모투자신탁은 위 지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Covered call, 아래 설명 참조)을 활용하여 주가 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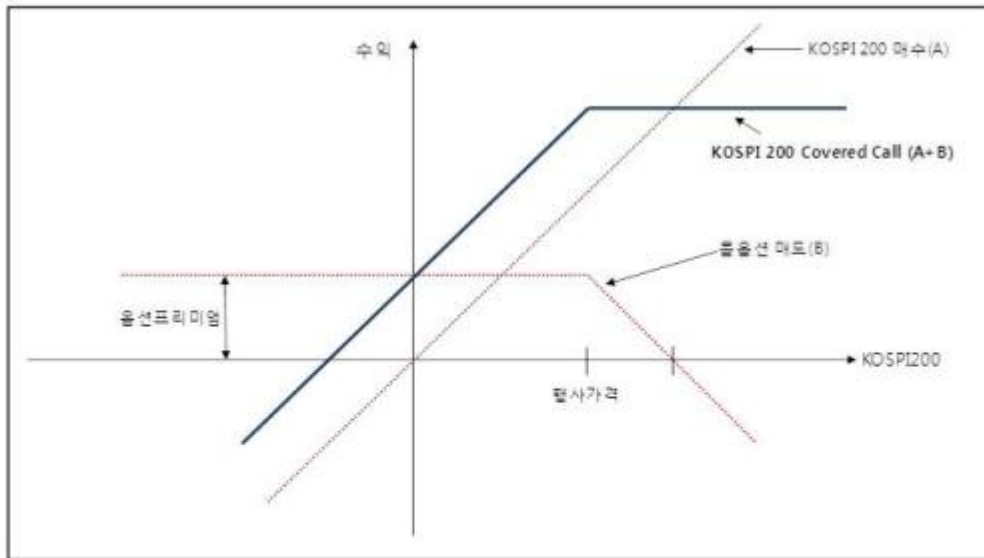
※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이란?

주식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콜옵션을 월단위로 매도하는 커버드콜 투자 전략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확보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경우 수익이 한정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 ▶ 주가 급등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신탁 전체의 수익률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됨
-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콜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 주가 하락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의 월단위 수익구조]



※ 위 그림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KOSPI200 종목으로 구성되는 현물 및 선물 포트폴리오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매도를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종목이 아닌,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구조는 위의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70%) + MMI(30%)

<KOSPI200 :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MMI = 한국채권평가 단기금융지수(Money Market Index) (<http://www.koreabp.com>)>

* MMI = 한국자산평가 단기금융지수(Money Market Index) (<http://www.koreaap.com>)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등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전략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배당주등으로 구성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전략
	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 비교지수: KOSPI200(70%) + MMI(30%)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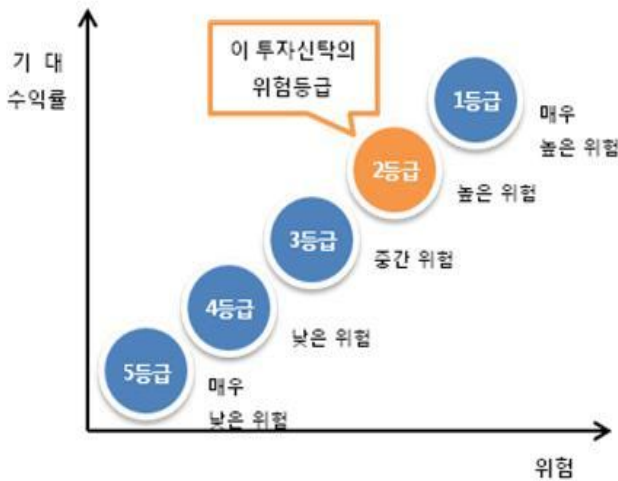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며 소수 종목 혹은 특정 지역(국가) 및 일부 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등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인 주식에 90% 이하를 투자하고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주식투자에 따른 하락위험이 일정부분 감소될 수 있는 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14.09.30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봉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송진용	1975	본부장	41개	33492억원	(03년~06년)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	-	-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14.09.30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성과보수가 약 정된 집합투자 기구	
			운용중인집 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0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 용 글로벌투자부문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글로벌투자부문” 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총괄하
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 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
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연도 (기간)	최근 1년차 '14.03.17~'14.08.31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투자신탁	-	-	-	-	-
종류C	-	-	-	-	-
종류C-e	-	-	-	-	-
비교지수	-	-	-	-	-

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 비교지수는 KOSPI200(70%) + MMI(30%)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수수 료	환매수수료	전환수 수수료
종류C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	-	-	-
종류C-e	온라인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용(연간, %)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총보수비용(피 투자집합투자 기구보수포함)
종류C	0.31	0.680	0.03	0.02	-	1.04	1.04
종류C-e	0.31	0.200	0.03	0.02	-	0.56	0.56
지급시기					사유발생시	-	-

주1) "기타비용"이라 함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위의 기타비용 비율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과생형))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 비율은 향후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과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22	335	584	1,2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2	335	584	1,299
종류C-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3	180	314	6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3	180	314	699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	-----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구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매입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p>제1영업일 제2영업일</p> <p>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일</p> <p>(3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p>	<p>제1영업일 제3영업일</p> <p>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일</p> <p>(3시 경과 후) 기준가격 적용일</p>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p>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4영업일</p> <p>환매신청 기준가격 환매대금</p> <p>(3시 이전) 적용일 지급일</p>	<p>제1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p> <p>환매신청 기준가격 환매대금</p> <p>(3시 경과 후) 적용일 지급일</p>

4. 전환 절차 및 방법

구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하고 -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매입(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하고 -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매입(전환)

※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p>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Focus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며,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p>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p>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 Focus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 Focus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p> <p>② 비교지수: 없음</p>
<p>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p>	<p>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90% 이상 투자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 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 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p> <p>②비교지수: KOSPI</p>
<p>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p>	<p>①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p> <p>② 비교지수: KOSPI200 70% + MMI 30%</p>
<p>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p>	<p>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90% 이상 투자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p>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비교지수: KOSPI 중형주지수(80%) + KOSPI 소형주지수(20%)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7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7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70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70% + KOSPI×30%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50% 이상 60% 이하로 투자하며,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상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교지수 : KOSPI 50% + MSCI AC World Index 50%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청구 시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전환은 불가하므로,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전환청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2.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합니다.

3.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합니다.

(2) 전환청구의 취소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당일 15시까지로 한합니다. 다만, 15시 경과 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까지로 한합니다.

2.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합니다. 다만, 17시 경과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로 한합니다.

(3) 위의 (1)항 1호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위의 (1)항 2호 및 3호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4) 수익자가 전환청구한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수익자는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